

2021년 해양환경공단 하반기 장애인 청년인턴 추가 채용 공고

국내 유일 해양환경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환경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1. 09. 10.
해양환경공단 이사장

1. 채용 개요

□ 선발예정인원 : 총 10명

모집유형	지원분야	모집단위	합계(명)
장애특별	일반행정 보조	본사	10

□ 지원자격

채용분야	응시자격
장애특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: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· 응시조건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· 학력, 성별 및 전공 무관

□ 가점사항

- 전형별 해당항목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부여
-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용비율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항목만 부여 : 장애인 가점 일괄 10% 부여로 최대가점 적용

□ 공통 자격사항

내용
<p>□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응시자격 기준 시점: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내 ▶ 성별 무관 ▶ 공단 인사규정 제49조(정년)에 따른 만 60세 미만인 자 ▶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▶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-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“해임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“파면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미성년대상 성범죄자(영구 결격)

□ 근무조건

- 계약조건 : 체험형 청년인턴(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)
 - 계약기간 : 2021. 10. 13.(수) ~ 2021. 12. 24.(금)
 - 보 수 : 월 185만원 수준 (4대 보험 등 포함)
 - 근무조건 : 월 만근 시 연차휴가 월 1일 지급, 주 40시간 근무(8시간/일)
 - 근무지역 : 모집단위별 근무지
- ※ 4대 보험료(근로자 부담금) 포함, 급여 외 별도의 지급 수당 없음
- ※ 근무종료기간에 따라 고용계약 종료
- ※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활동자로 선정될 경우, 공단 공개 채용시험 시 만점의 2퍼센트 이내로 가점 부여(수료일로부터 2년)

2. 채용절차(단계별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)

블라인드 채용 안내

-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,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나이, 출생연도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사진 등)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
□ 전형 절차



□ 입사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1. 09. 10.(금) ~ 09. 27.(월) 오전 11시
- 접수방법: 공단 이메일 접수(recruit@koem.or.kr)
- 메일 도착시간 기준으로 마감시한 이후 입사지원서 제출 지원자는 접수불가

□ 서류전형

-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
 - 정성평가: 입사지원서 상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
 - ※ 서류심사 후 해당분야 면접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더라도, 선발된 인원에만 한하여 면접전형 진행
 - ※ 정성평가 동점자 발생 시 복수합격 처리

□ 면접전형

- 면접유형: 대면면접(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)
 - 면접점수 합계의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
-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(동점자의 합격결정)에 따라 합격자 결정

□ 합격자 발표 및 임용

-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및 공단 임용
-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

3. 전형일정(안)

내용	일정
▶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	2021. 09. 10.(금) ~ 09. 27.(월) 오전 11시
▶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1. 10. 01.(금)
▶ 면접시험 실시	2021. 10. 06.(수)
▶ 최종합격자 발표	2021. 10. 08.(금)
▶ 합격자 임용	2021. 10. 13.(수)

※ 상기 일정은 코로나-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▶ 입사지원서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※ 채용사이트를 통한 작성 및 제출
면접대상자	▶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한 자격사항, 학력사항, 경험사항 증빙 각 1부 ▶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 1부
최종 합격자	▶ 기본증명서(주민등록번호기재분) 1부 ▶ 가족관계증명서 1부 ▶ 주민등록등본 1부 ▶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분) 1부 ▶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 1부(인적사항 미삭제 분) ▶ 반명합판 사진 1매(전자파일 포함) ▶ 통장사본 1부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건(진위여부 검증 예정)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
※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면접대상자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이후 제출(별도 안내 예정)

- 유의사항 : **블라인드 채용전형 방식에 따라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 인적사항(이름, 성별, 나이 및 출생연도, 출신지, 출신학교, 사진 등)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제출**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5. 기타사항

- 공단은 **블라인드 방식에 따라 채용을 진행**하며, 매 전형별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나이, 출생연도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사진 등)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을 불가하며, 해당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(부적격 처리)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증빙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등에 학력 등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**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상 특이사항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**
- 숙소제공은 없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드립니다.
 - 신청 기한: 입사지원자의 합격여부가 결정된 날 이후, 14일부터 3개월까지
 - 신청 방법: 별지 서식(반환청구서) 작성 후, 공단 채용담당자 이메일(insa@koem.or.kr) 또는 팩스(☎ 02-3462-7707), 등기우편으로 제출
 - 우편 발송주소: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,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
 -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.
 - 천재지변 및 공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, 공단은 채용 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기타 채용 관련사항은 공단 인재경영처(☎ 02-3498-865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서식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